한화생명 The H3 종신보험 무배당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 등 한화생명 The H3 종신보험 무배당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아래 내용은 보장형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및 스마트치매전 환형 계약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한화생명 The H3 종신보험 무배당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 A: ① 이 상품은 보험기간 동안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며, 사망보험금을 체증형 기능으로 강화한 상품입니다.
 - ② 이 상품은 단기간에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가입시점의 보험가입금액이 종신토록 유지되고,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시점에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에 비해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나, 보험료가 비쌀 수있습니다.
 - ③ 납입기간후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일부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전환하여 진단자금 및 간병자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④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부터 3년 미만의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 입니다.
 - 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 보장형 계약 표준형의 기본해약환급금 × 50%
 -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
 - 나. 보험료 납입기간 후
 -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부터 3년 미만
 -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보장형 계약 표준형의 기본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
 -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부터 3년 이후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 ⑥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 추가납입을 할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인출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예정적립이율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2.8%, 10년 초과 연복리 1.8%)로 적립해 드립니다.

Q: 건강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 A: 건강체 가입시점에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해당 계약 가입이 가능한 자(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해당 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건강체 가입시점에는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해당 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를 포함)로서 나이 (20세이상)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① 비흡연 : 직전 1년간 흡연사실이 없을 것
 - ② 혈압 : 수축기혈압 139(mmHg)이하이고 이완기혈압 89(mmHg)이하
 - ③ 체격: BMI수치(체중/키²)가 18.5(kg/m²)이상 25(kg/m²)미만
 - ※ 해당 계약 : 건강체서비스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
 - ※ 피보험자가 상기 건강체 기준에 부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준체에 비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주계약,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가입금액 1억원, 7년납, 월납, 단위: 원)

	나이	표준체 보험료		건강체 보험료	
	L _t ol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구 분	30세	1,110,000	1,031,000	1,092,000	1,023,000
	40세	1,285,000	1,193,000	1,266,000	1,185,000
	50세	1,491,000	1,386,000	1,471,000	1,376,000

Q: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 A: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총액의 1배 이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아래의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 × 12 × 100% × 가입 후 경과년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 가입후 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기준사 망보험금의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Q: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A: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만 가능합니다.
 - ① 인출횟수: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까지
 - ② 인출가능시기: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또는 전환일 이후)부터
 - ③ 인출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원 한도, 연 4회 면제)
 - ④ 1회당 인출가능금액
 - 최소 10만원 이상
 -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주계약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의 50% 이하
 - ⑤ 인출한도 :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추가납입보험료를 포함하며 단, 특약보험료는 제외)
 - ⑥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 최저 보유금액 : 해당사항 없음

Q: 보험료 할인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단체취급 할인: 1.5%

-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할인에서 제외합니다.
- ※ 단체취급특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1. 주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대상단체에 소속 되어야 합니다.
 - 2. 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 단체에 소속한 주계약의 보험계약자 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대상계약,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콜센터(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 보험은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A: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헬스케어 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A: ①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에 충족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습니다.
 - ③ 본 서비스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신청 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중인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서비스 변경 내용 및 서비스 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헬스케어 서비스 부가기준, 서비스 내용, 제공기간, 제공방법, 제휴사 변경 시 회사 홈페이지 (www.hanwhalife.com)를 통해 공지합니다.

Q: 갱신형특약에서 갱신제도란 무엇인가요?

A: 갱신제도 및 갱신에 따른 보험료 변동, 보험기간 종료일 등은 아래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① 갱신제도 : 갱신형 특약 가입이후 보험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보험계약자가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 ② 보장개시일: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③ 보험료의 변동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적용 기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은 갱신시점의 적 용기초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나이증가, 적용기초율 변동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⑤ 갱신주기: 5년 ~ 30년(특약별 상이,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주기 미만일 경우 잔여보험기간)
- ⑥ 갱신불가 사유
 - 가.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15일전까지 보험계약자가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나.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다. 약관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경우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Q: 플래티넘보너스란 무엇인가요?

- A: ① 플래티넘보너스 가산금액을 플래티넘보너스I 및 플래티넘보너스II로 나누어 각각의 플래티넘 보너스 가산일에 추가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단, 플래티넘보너스 가산일에 유효한 보장형계약(이하, '플래티넘보너스 가산대상 계약'이라 함)에 한함)
 - ② 추가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플래티넘보너스 가산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특칙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개시된 경우 포함)하거나 적립형 계약 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일부 전환할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전환 이후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플래티넘보너스 가산을 적용합니다.
 - ④ 플래티넘보너스 가산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플래티넘보너스 가산일이 경과된 이후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플래티넘보너스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⑤ 플래티넘보너스 가산일 :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 당일 및 계약일로부터 10년시점의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⑥ 플래티넘보너스 가산금액
 - = 주계약 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 × 플래티넘보너스지급률

- 플래티넘보너스지급률

가입금액 납입기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년납	14.5%	16.8%
7년납	16.2%	18.6%

- 플래티넘보너스 I, II 가산일 및 가산금액

구분	가산일	납입기간	가산금액
플래티넘 보너스I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	5년납	'주계약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에서 가산일 시점의 보장형 계약 표준형의 정상납입 기본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2년의 기간에 대해 예정적립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
	- II O	7년납	'주계약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에서 가산일 시점의 보장형 계약표준형의 정상납입 기본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플래티넘 보너스II	계약일로부터 10년시점의 월계약해당일		플래티넘보너스 가산금액에서 플래티넘보너 스 I 가산금액을 차감한 금액

Q: 중도부가서비스특약의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중도부가서비스특약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계약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중도부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중도부가특약은 중도부가 신청 시점에 주계약(또는 주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상품)에 부가하여 판매 중인 특약 중 회사가 정한 특약을 말하며, 해당특약에 중도부가형이 별도로 설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도부가형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Q: 이 보험에 부가된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8)은 어떤 특약인가요?

A: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업방법서, 약관 본문 및 상품설명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가. 보험의 종류

- 한화생명 The H3 종신보험 무배당
- (1) 보장형계약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 표준형
- (2) 적립형계약
- (3)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
 - 해약환급금 보증 : 1종(체증형), 2종(기본형)
 - 해약환급금 미보증 : 1종(체증형), 2종(기본형)
- (4)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의 경우 이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이라 한다.
- ※ '적립형 계약'의 경우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시에만 적용합니다.
-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의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에만 적용합니다.
- ※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경우 보장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각각 1회한)시에만 적용합니다.
- ※ '표준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나. 보험기간

■ 주계약

- (1) 보장형 계약 : 종신
- (2) 적립형 계약 : 종신
- (3) 스마트전환형 계약 : 종신
- (4)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 90세, 95세, 100세, 110세 만기
- ※ 단,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스마트치 매전환형 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종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로 함

■ 갱신형 특약

- 질병후유장해(3~100%)특약(갱신형) 무배당 : 5년만기, 10년만기, 20년만기 또는 30년만기 자동갱신(최대100세)

다.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납입기간

(1) 주계약

보장형 계약 : 5년납, 7년납적립형 계약 : 종신납

- 스마트전환형 계약 : 일시납 -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 일시납

(2) 갱신형 특약 : 전기납

- 질병후유장해(3~100%)특약(갱신형) 무배당 : 5년, 10년, 20년 또는 30년마다 보험료 갱신

※ 납입기간 변경 불가

■ 납입주기

(1) 보장형 계약 : 월납(2) 적립형 계약 : 수시납

(3) 스마트전환형 계약 및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 일시납

※ 갱신형 특약은 일시납 선택 불가

라.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장형 계약

(가) 최저가입나이 : 만 15세

(나) 최고가입나이 : 성별, 납입기간별로 아래와 같음

구 분		최고가입나이
남자	5년납	69세
⊟ ^1	7년납	70세
여자	5년납	72세
M/L	7년납	71세

■ 적립형 계약 (전환시점의 나이)

피보험자	전환시점의 나이		
피도함시	남자	여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D14511 7511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마시도네 그도네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	만15세 ~ 75세	만15세 ~ 75세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 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시점의 나이)

	전환시점의 나이			
피보험자	해약환급금 보증		해약환급금 미보증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만15세	~70세	만15시	ᆌ∼70세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전환시점의 나이)

피보험자	전환시점의 나이		
피도감시	남자	여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24세 ~ 70세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35세 ~ 70세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	33/11 ~ 70/11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함자(가입자녀)			

마. 가입한도 및 건강진단여부

■ 가입한도

구 분		가입 한도		
	보장형계약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 위험직급별 가입한도 이내		
주계약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 60세 61세 ~	100만원 ~ 1,000만원 100만원 ~ 500만원	

[※] 선택특약은 회사가 정한 한도까지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가입한 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여부

한화생명 The H3 종신보험 무배당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가. 상품의 구성

주계약	한화생명 The H3 종신보험 무배당
선택특약	+ 질병후유장해(3~100%)특약(갱신형)(TA2.1) 무배당[일반가입형]
제도성특약	+ CI연금전환특약(K6.1) 무배당 + LTC연금전환특약(K2.8) 무배당 + 건강체서비스특약II(K1.1) + 계약분리특약(K1.3) + 단체취급특약(K1.6) + 사망보험금조기지급특약(K1.11) + 선지급서비스특약(K3.7) + 스마트연금전환특약(K2.7) 무배당 + 양육자금 전환특약(K5.1) + 장애인전용 세제전환특약(K1.2) + 중도부가서비스특약(K2.7)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8)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4) + 표준하체인수특약(K3.6)

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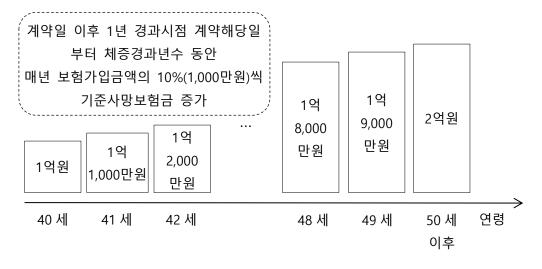
1) 보장형 계약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주) 1.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 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해약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2.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액의 101%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 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1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4.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액과 '이 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적립형 계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보험료의 6배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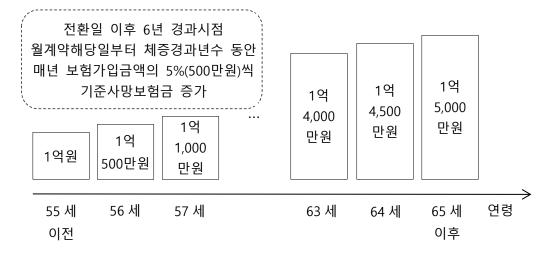
3) 스마트전환형 계약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주) 1.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2.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1종(체증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전환일부터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환일부터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 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50세 전환, 1종(체증형) 선택, 스마트전환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 망보험금



- (2) 2종(기본형):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4.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전환일 이후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액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5.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경도치매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5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다만, 경도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상기 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자금을 뺀 차액 지급)
중증치매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3,000만원 (다만, 경도치매 진단자금 또는 중등도 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 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지급)
중증치매 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생존시 최초 최종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최 종 진단 확정일에 50만원을 지급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생존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최초 36회 보증지급, 단 30년(360회)을 최고 한도로 지급)

- 주) 1.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약관 제3조('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로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2. '치매보장개시일'은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3.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전환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 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 함)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회사는 그 날부터 약관 제39조(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도 불구하 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계약(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 4. 전환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치매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주3)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전환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1호의 경도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2호의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제3호 및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중증치매 진단자금 및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2) 전환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제1호의 경도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2호의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3호 및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중증치매 진단자금 및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5.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 회사는 그 날부터 약관 제39조(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및 효력발생)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계약(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 6. 경도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에서 경도치매 진단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자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7. 경도치매 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및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자금 또는 중등도 치매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8. 중증치매 간병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9.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10. 중증치매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360회 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중증치매 최종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선지급금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매년 감액할 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지급

- 주) 1. 연금선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 2. 연금선지급금액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해당월의 연금선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연금선지급 해당일로 합니다.

■ 질병후유장해(3~100%)특약(갱신형)(TA2.1) 무배당[일반가입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질병"(재해 이외의 장해 상태 발생 원인을 말합니다.)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약관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보험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제한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다음의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② ①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②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로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사항 등

- ①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 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실제로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 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② 만15세 미만자(실제 만나이 기준),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다만,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②의 만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가. 보장부분 적용이율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Q: 이 상품에 적용한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얼마입니까?

A: 한화생명 The H3 종신보험 무배당의 보험의 주계약 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2.8%, 10년 초과 연복리 1.8%이며, 특약의 산출이율은 연복리 2.75%(다만, 보험기간 3년 이하인 갱신형 특약의 산출이율은 2.25%)입니다

나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무배당 예정 경험 사망률

구 분	남자	여자
20세	0.000320	0.000200
40세	0.000850	0.000500
60세	0.003770	0.001500

다 적용해지율

Q: 적용해지율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 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기준으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적용한 적용해지율은 납입기간 이내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연 0.5%~13.77%이며, 납입완료 시점부터 3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연 7.5%~17.3%입니다. '표준형'에는 적용해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The H3 종신보험 무배당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보험의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7년납, 표준체, 월납, 단위: 원)

경과	남자			여자		
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3,855,000	-	0.0%	3,579,000	-	0.0%
6개월	7,710,000	517,806	6.7%	7,158,000	485,349	6.7%
9개월	11,565,000	2,338,318	20.2%	10,737,000	2,178,148	20.2%
1년	15,420,000	4,170,679	27.0%	14,316,000	3,881,966	27.1%
2년	30,840,000	11,618,900	37.6%	28,632,000	10,808,913	37.7%
3년	46,260,000	19,262,167	41.6%	42,948,000	17,917,340	41.7%
4년	61,680,000	27,105,978	43.9%	57,264,000	25,213,248	44.0%
5년	77,100,000	35,155,337	45.5%	71,580,000	32,701,635	45.6%
6년	92,520,000	43,416,743	46.9%	85,896,000	40,387,501	47.0%
7년	107,940,000	107,940,000	100.0%	100,212,000	100,212,000	100.0%
10년	107,940,000	132,200,742	122.4%	100,212,000	122,948,808	122.6%
20년	107,940,000	154,170,474	142.8%	100,212,000	143,827,741	143.5%
30년	107,940,000	179,905,740	166.6%	100,212,000	168,511,595	168.1%
40년	107,940,000	211,496,398	195.9%	100,212,000	197,785,899	197.3%
50년	107,940,000	249,018,680	230.7%	100,212,000	233,205,780	232.7%
60년	107,940,000	290,731,999	269.3%	100,212,000	272,421,902	271.8%

- ※ 상기 예시된 금액은 플래티넘보너스 가산대상 계약에 한하여 '플래티넘보너스 I 가산금액' 및 '플 래티넘보너스표 가산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주계약 산출이율은 10년 이내 연복리 2.8%, 10년 초과 연복리 1.8%(다만 특약의 경우 2.75%)입니다.
- ※ 다음과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은 예시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선납을 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계획이 변경된 경우
- ※ 상기 예시된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납입보험료 로 나눈 비율입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

A: 해당 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참조순보험료 총액: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평균사업비 총액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사프며	나이 보	보험기간	납입기간 -	보험가격지수		가입
상품명				남자	여자	금액
한화생명 The H3 종신보험 무배당	40세	종신	7년납	116.3%	121.2%	10,000만원